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새한철학회'(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이하 '본 학회'라 한다)이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철학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술교류를 장려하고, 철학 교육과 철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학술발표회
2. 학술지 발간
3. 분과연구
4.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5. 저작활동과 출판을 위한 공동사업
6.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 (사무실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임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부담의 의무가 면제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1. 본 학회는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 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학회는 부회장 약간명을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차기회장 궐위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회장과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1. 본 학회는 30인 내외의 이사를 두며,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실무이사로 총무이사, 연구이사, 연구윤리이사,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2. 총무이사는 학회 간사의 직을 수행하며, 섭외이사는 대외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제정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1. 본 학회는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및 위원)

1. 본 학회는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두되 연구이사과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이사가 그 직을 수행한다.
2. 위원장은 전공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30인 내외의 당해 위원회 위원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1.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고문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법인화추진위원회)

1. 본학회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인화추진위원회를 둔다.
2.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지출한다.
3.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 학회의 법인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법인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을 둔다.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차기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선임
 - ②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③ 회칙의 제정 및 개폐
 - ④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 ⑤ 명예회원의 승인
 - ⑥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의 임회 심의 및 명예회원의 추천
 - ② 사업 계획 및 추진

- ③ 회원의 자격 제한
- ④ 고문의 추대
- ⑤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승인
- 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6조 (각 위원회)

1.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각 위원회는 당해 위원장이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한다.

제5장 사무실 운영, 회의록 작성

제17조 (사무실 운영)

1. 학회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간사를 둔다.
2. 업무간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1.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업무간사가 기록·보관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30,000원
2. 연회비 : 30,000원
3. 종신회비 : 연회비의 10배이며,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종신회비 관리지침)

1. 종신회비는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관리한다.
2. 종신회비원금 사용 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및 예·결산보고)

1. 회계연도는 당 해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운영세칙

제23조 (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위원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3.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3년 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1998년 5월 23일부로 개정되었으며, 1998년 5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0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2년 11월 1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 11월 16일부로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3년 4월 2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7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본 운영세칙은 새한철학회 회칙 제3장 임원 제 11조 (위임장 및 위원) 제4장 회의 제16조 (각 위원회), 제7장 제23조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제반사항을 규정한다.(이하에서는 ‘본 위원회’라 함은 새한철학회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 (구성과 기준)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칙에 의거한 소정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위원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연구자로 구성한다.

1. 철학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선정한다.
2. 전국성, 지역성, 국제성을 위해 국내 5개 이상 지역과 국외 지역에 분포되도록 선인한다.
3. 철학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 전공자를 선임한다.
4. 연구윤리 의식이 투철하고 학회 편집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로 선정한다.

제3조 (업무)

1. 본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저술 및 번역 사업 관장, 기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2. 본 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3.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한다.
4. 영문요약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영어 전문가를 감수자로 선정한다.

제4조 (회의)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서신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 항에 따른다.

1. 각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 받고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위원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한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 투고규정)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는 있으나 투고한 호의 운영에는 배제한다.

제6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되,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하다.

『철학논총』 투고규정

1. 투고자격은 투고일 현재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정회원에 한정된다.
2.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의 투고분량은 20쪽을 권장하며, 초과시 1쪽당 5,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3. 투고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게재료가 부과된다.
 - 연구비 수혜 논문 : 20만원
 - 일 반 연구 논문 : 교수 10만원(연구교수, 연구원 포함), 그 외 5만원
4. 논문투고와 함께 심사비 6만원을 입금해야 하며, 심사 후 게재결정이 통보되면 게재료를 입금해야 한다.
5. 원고 종류
 - 1) 연구논문: 철학 관련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우리나라 철학계의 전반적인 연구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신의 연구 성과이어야 한다.
 - ② 논문의 주제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④ 1차 또는 2차 문헌들에 대한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논문들은 권장되지 않는다.
 - ⑤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⑥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
 - ⑦ 표절되었거나 표절의 의심이 있는 논문, 중복 게재의 의심이 있는 등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2) 논 평 : 최근 2년 이내에 『철학논총』에 게재된 논문 및 철학영역의 국내 주요 연구동향에 대한 평
 - 3) 서 평 : 최근 3년 이내에 출간된 철학영역의 국내외 저서 또는 번역서에 대한 평
6. 투고 요령
 - 1) 아래의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파일을 새한철학회 논문투고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 후에 탑재한다.
 - 2) 학회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는다.
7. 원고 작성요령
 - 1) 프로그램 : 한글 2010 이상
 - 2) 작성형식 : saehan.hwp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
saehan.hwp에는 편집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하거나 아래의 <편집 양식>을 참조하여 스타일을 직접 작성하여, 한글에서 논문을 작성한다.

3) 편집 양식

- ① 논문용지 : 신국판 (148×225 mm 기준)
 ② 용지여백 : 위쪽·아래쪽 24 mm, 왼쪽·오른쪽 19 mm, 머리말 10 mm, 꼬리말 0 mm
 ③ 편집형식

구분	글 자 모 양				문 단 모 양				
	글꼴	자 간	장 평	날말간격	줄간격	정 령	여 백	첫제줄	
바탕글	한글	휴먼명조 9.5	-10	100	20	15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영문	Times New Roman 9.5	-5	100	20	15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한문	신명세명조 9.5	-5	100	20	15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논문주제목	휴먼명조 13	-10	100	20	120	가운데			
논문부제목	휴먼명조 10	-10	100	20	120	가운데			
큰제목 I.	휴먼명조 12	-10	100	20	120	가운데			
소제목 1.	중고딕 10.5	-10	100	20	120	양쪽혼합		들여쓰기 5	
소제목 1)	휴먼명조 10.5	-10	100	20	12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소제목 (1)	휴먼명조 10	-10	100	20	120	양쪽혼합		들여쓰기 15	
소제목 ①	휴먼명조 9.5	-10	100	20	120	양쪽혼합		들여쓰기 15	
머리글	휴먼명조 8	-10	100	20	0	가운데			
각주	휴먼명조 8	-10	100	20	130	양쪽혼합			
인용문	휴먼명조 8.5	-10	100	20	140	양쪽혼합	왼쪽 20	들여쓰기 10	
참고문헌	휴먼명조 9	-10	100	20	140	양쪽혼합		내어쓰기 35	
한글요약	휴먼명조 8.5	-10	100	20	14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영문요약	Times New Roman 8.5	-5	100	20	140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4) 참고문헌

- ① 본문에서 인용·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하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구문 문헌을 실고, 각각 저자이름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② 참고문헌의 표기형식

가) 저서

(가) 동양어권

홍길동, 『철학의 위기』, 세종출판사, 부산, 1999.

(나) 서양어권

Heidegger, M., Sein und Zeit, 12. Aufl.,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2.

나) 논문

(가) 동양어권

홍길동, 「철학의 위기와 그 현실적 대안」, 『철학논총』제14집, 새한철학회, 1998, 여름.

(나) 서양어권

Popper, K., "Über die Möglichkeit der Erfahrungswissenschaft", Ratio 1, 1957/58.

5)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한, 논문의 본문 항목구별은 I., 1., 1),

(1), ①로 표시한다.

6) 요약문

① 언어 : 한국어와 외국어(제목과 저자명 명기)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 주제어 5개를 명기

② 분량 : 200자 원고지 2-3매 이내

8. 투고된 논문의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9. 원고 접수처

새한철학회 논문투고 시스템 : <https://dbpiaone.com/shpa/index.do>

전화 : 010-5007-7157

계좌 : 대구은행 508-14-771238-3 (예금주: 송호영 새한철학회)

메일주소 : e-mail: saehanph@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saehanphilosophy.or.kr>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투고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철학논총』 발행규정

1. 『철학논총』은 년 4회 발행되며, 그 시기는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이다.
2.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발행일 45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수대장, 심사대장을 작성한다.
4.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회가 일차로 투고규정 준수 여부,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규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다음 심사대상 논문을 결정한다.
5.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연구윤리에 저촉하는 경우라고 결정되면 저자에게 통보한다.
6.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심사 결과 게재대상이 되는 경우도 논문내용의 수정, 보완,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8. 공동 투고논문일 경우 이름표기의 선행자를 책임연구자로 한다.
9.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0. 학회 학술지 『철학논총』에 게재된 원문을 학회 홈페이지 (<http://www.saeahanphilosophy.or.kr/sobis/shph.jsp>)에 탑재하고, 일반인에게 원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철학논총』 심사절차 및 규정

1. 심사절차

- 1) 편집위원회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해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주제 적합성을 심의하는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심사 대상 논문의 목록을 작성한다.
- 2) 각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 '2. 심사위원 위촉'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주제의 특수성)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내에 철학논총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논문투고 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 5) 3편의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 목록을 작성한다.
- 6)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심사평가 내용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2.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1) 심사 위원은 투고논문의 저자에 의해 표시된 주제 분야와 일치하는 전공자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되,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2) 심사 대상 논문이 융·복합 관련 논문일 경우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한다. 단, 관련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전공자를 위촉한다.
- 3) 외국어 논문 심사는 해당국 전문가에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섭외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연구자 중에서 해당 외국어 학위 취득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 기준

- 1) 논문주제의 명확성
- 2) 연구방법의 창의성
- 3) 논리전개의 타당성
- 4)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5) 논문의 완성도
-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7) 투고규정준수 여부

4. 심사평가서 양식

소정양식 (철학논총 논문투고시스템에 게시)

5. 심사 요령

- 1) 심사기준과 심사평가서 항목을 숙지해야 한다.
- 2) 심사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한다.
- 3) 심사평가서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4) 심사 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 5) 게재 여부의 판정은 항목별 평가 및 심사요지와 일치해야 한다.
- 6) 수정 요청 사항은 심사요지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 7)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심사요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 8) 심사 기한을 준수한다.

6. 심사위원 3인의 투고논문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판단 기준표

투고논문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판단 기준표

순번	심사 내용	처리 기준	심사 결과	비 고
1	1. 3인 모두 게재 가	수정사항 수정	게재가	게재가
2	1. 게재 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2. 게재 가 2인,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1인 3. 게재 가 2인, 게재불가 1인 4.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2인 5.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1인 6. 수정 후 게재 3인	수정사항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조건 충족 후 게재
3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 2. 게재 가 1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 2인 3.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 1인 4.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불가 1인 5.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 2인 6. 수정 후 다음호 재심 3인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사항 제시하여 재투고 받음	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	3인의 재심 후 게재 결정
4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 1인, 게재불가 1인 2. 게재 가 1인, 게재 불가 2인 3.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다음호 재심 1인, 게재불가 1인 4.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2인 5. 수정 후 다음호 재심 2인, 게재 불가 1인 6. 수정 후 다음호 재심 1인, 게재 불가 2인 7. 게재 불가 3인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철학논총』 게재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

1. 본 규정은 새한철학회 학술지 『철학논총』(이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작권 양도
 - 1) 투고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학회에 위임한다.
 - 2)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지닌다.
3. 저작권 양도 후 저자의 권리
 - 1) 저자가 해당 논문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할 경우, 즉 교육용 교재, 연구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 복제 및 인쇄할 권리를 지닌다.
 - 2) 저자가 저서와 논문의 작성, 연구 발표 및 워크숍 등에서 자료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회와 저자가 협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새한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 문

새한철학회(이하 학회)는 철학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술 교류를 장려하고, 철학교육과 철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철학논총』의 논문 투고와 심사, 출판을 비롯한 봄,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들은 최고의 연구윤리 의식을 토대로 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철학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 회원들의 학술연구와 논문 투고, 학술발표, 논문심사 등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철학연구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철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금지

저자(투고자, 발표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7단어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면 표절로 간주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및 자신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간접인용을 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참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표절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이전에 출판된 본인의 연구 업적(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아울러 동일한 연구 업적을 여러 학회에 중복 투고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 업적을 활용하여 투고하거나 출판할 경우에는 학회지나 출판사의 편집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분명히 제시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의 표시

1.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그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공동연구나 저술(번역)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다른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본문의 내용과 서지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2. 다른 연구자의 글이나 문장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이해상충

1.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제1조.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책임을 진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거나 선입견, 사적인 친분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관계없이 오직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경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고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조.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심사위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저자에 관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논문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논문 평가의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점을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관해 제삼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심사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2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새한철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의 정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이 발효되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회원은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승인한 때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제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로 제보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명 방식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징계는 경고, 투고 제한, 임원 해촉, 회원 자격 정지, 회원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조치를 유관 단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위반의 정도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표절이나 자기 표절, 중복게재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3년간 투고금지, 3년간 회원자격 정지, 회원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장은 임원과 상의해서 학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1-2회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12일부로 시행한다.

An Overview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founded in 1983 initially as The Yeungnam Philosophical Association, is one of the main organizations for philosophers in Korea. The NKPA is primarily a membership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philosophers and those interested in professional philosophy. Its mission is to encourage scholarly activity in philosophy, to promote and exchange creative ideas, and to make philosophy available for the public and their daily disciplines. To do so, the NKPA is to

1. hold academic conferences twice in a year: Spring and Fall;
2. publish the quarterly: *The Journal* of the NKPA (*The Chulhak-Ronchong*);
3. help its members engage more in sectional seminars and academic activities;
4. pursue scholarly exchanges of ideas and publications with other philosophical organization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5. cooperate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in the publication of their literary work; and
6. host some necessary enterprises for promoting the NKPA and its membership.

The NKPA is a nationwide academic society and presently consists of more than 400 members with either master's or higher academic degree. In order to drive the Association more efficiently, the Board of Officers is composed of the President, several Vice-Presidents, Editorial Committee Director and Research Committee Director. The business of the Board and Committees includes approving the subjects and presenters for the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for publication, and conducting any other NKPA-related projects put before it.

The Journal of the NKPA(*The Chulhak-Ronchong*), the quarterly of the NKPA proceedings, purports to promote scholarly activities of its members, to urge exchanges of academic ideas, and to help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academic organizations in and out of the country. The Quarterly issued its first edition in 1984 and is now proudly publishing the latest edition, its twenty third. The Quarterly is open for all members of the NKPA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the selection procedure for publication is strictly regulated and judged by the Proceedings Committee. Each paper submitted will be carefully examined by two committee members in a closed meeting.

The NKPA administers each year an annual prize for the best paper on *The Journal* (*The Chouhak-Ronchong*), encouraging the junior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publish more of their philosophical work. This year is its 10th for the Prize.